### 한국한의약진흥원 정관

제정: 2019. 5. 30.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「한국한의약진흥원」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이라 하고, 영문으로는 「National Institute for Korean Medicine Development (약칭 NIKOM)」로 표기한다.
- 제2조(목적) 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따라 설립되었으며,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소재지)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를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94 (갑제동)에 두고 분사무소는 전라남도와 서울특별시에 두며,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, 부설기관, 해외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.
- 제4조(사업) ①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- 1.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
  - 2.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ㆍ유통의 지원
  - 3.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・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・연구
  - 4.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한의약육성종합계획 수립 지원
  - 5.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

- 6.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
- 7.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
- 8.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
- 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 · 수탁 및 부대사업
- 10.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②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2조(목적)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#### 제2장 임원 및 직원

- 제5조(임원의 구성 및 정수) ①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  - 1. 원장 1인
  - 2. 이사 15인 이내(원장을 포함한다)
  - 3. 감사 1인
  -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- 제6조(임원의 선임) ① 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.
  -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 - 1.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

- 2.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
- 3. 지방자치단체(대구광역시, 전라남도, 경상북도) 담당 실장 또는 국장
- ③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근 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.
- 제7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진흥원에 임원 추천위원회를 둔다.
  -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8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원장 : 3년
  - 2. 이사(당연직 이사는 제외) : 2년
  - 3. 감사 : 2년
  - 4. 당연직 이사 :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
  -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,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 다만, 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.
- 제9조(임원의 직무)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 -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.
  - 1. 진흥원의 운영과 그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

- 2. 제1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및 시정요구
- 3. 제2호의 보고 및 시정요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원장에게 요구
- 4.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
- ④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흥원의 업무에 대한 직무대행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다만, 이사회의 의장은 제6조 제2항 각 호 순에 따라 당연직 이사가 대행한다.
- 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 - 1.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.
  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제1항, 제31조제7항, 제3 5조제2항·제3항, 제36조제2항, 제48조제4항·제8항 및 제52조의3 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제11조(임원의 당연퇴직 및 해임) ① 임원이 제10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(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.
  - 1. 법령,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진흥원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
  - 2.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에

손실을 초래하였을 때

- 3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
- 4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때
- 5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
- 6. 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때
- 7. 원장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통하여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때
  - 8.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서명한 임원해임요청서를 서명 이사 공동 명의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때
- 제12조(자문위원회) ①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직제 등) ① 진흥원에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.
  - ② 진흥원의 직제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직원) ① 진흥원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.
  - ② 직원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당하게 해임되지 아니한다.

- 제15조(겸직제한) ①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.
  - ②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에 따른다.
- 제16조(임직원의 보수) ① 임직원의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  - ②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회의수당,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7조(대리인의 선임) 원장은 필요 시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진흥 원의 업무에 관한 재판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이 사 회

- 제18조(이사회 구성) ① 진흥원의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  -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,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제19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경영목표, 진흥원의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- 2.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
- 3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- 5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6. 직제, 인사, 보수, 복무, 회계 등 주요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- 7.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 · 선임 등에 관한 사항
- 8.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
- 9. 기타 원장이 진흥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- 10.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20조(이사회 소집)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되, 정기이사회는 상·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  - 1.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- 2.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  - 3.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
  - 4. 제9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  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지

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원장이 이를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이사 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제21조(의결정족수 등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1. 임원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
  - 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- 3. 진흥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- ③ 제23조에 해당하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  - ④ 당연직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할 수 있다.
- 제22조(서면결의) 원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- 제23조(의결 제척사유) 재적이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- 1.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  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진흥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
  - 3. 진흥원과 이사 간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 쟁송에 관한 사항
- 제24조(회의록의 작성·비치 등) ① 원장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  -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·장소, 의사의 경과 및 심의·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  - ③ 진흥원은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진흥원소속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.
- 제25조(이사회 규정)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 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## 제4장 재산 및 회계

- **제26조(재산의 구분)**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-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- 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
- 2. 설립 이후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법인 및 개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- 3.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
- ③ 진흥원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『별지』과 같다.
- 제27조(재산의 관리) ① 진흥원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재산을 취득, 매도, 증여, 임대, 담보,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- ③ 진흥원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진흥원의 자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.
  - ④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28조(운영재원) 진흥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  - 1. 정부의 보조금, 위탁사업비
  - 2.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(果實)
  - 3.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
  - 4. 사업수익금
  - 5. 전년도 이월금(단, 국고보조금은 제외한다)
  - 6. 기타 수입금
- 제29조(회계의 구분) ① 진흥원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

분하며 정부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.

- ② 일반회계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, 위탁사업비 및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·기부금 등으로 수행하는 사업비로 각각은 구분계리 하여야 한다.
-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,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및 기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.
- ④ 제2항에 의한 기부금의 모금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- ⑤ 진흥원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30조(회계연도)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31조(사업계획 및 예산 등) 진흥원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- 1. 다음 연도의 예산총칙,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
  - 2. 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
- 제32조(결산) 진흥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
  - 1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
  - 2. 재무상태표(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)와 그 부속서류

- 3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- 제33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외의 채무부담, 채권의 포기,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34조(잉여금의 처리) 진흥원의 각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"정부회계지침"에 의거 반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순으로 처리한다.
  - 1. 이월결손금의 보전
  - 2.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
  - 3. 기본재산 편입

#### 제5장 보칙

- 제35조(정관의 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- 1. 변경사유서 1부
  - 2. 정관개정안(신·구조문대조표를 포함한다) 1부
  - 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
  - 4.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, 처분 재산의 목록,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
- 제36조(주요규정의 제ㆍ개정)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

-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·인사·보수·회계·복무 및 기타 주요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제2항의 내용 중 기타 주요 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제37조(해산·합병 및 잔여재산의 귀속) ① 진흥원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- ② 진흥원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 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귀속한다.
- 제38조(공고 및 경영공시) ① 법령과 진흥원의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. 다만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.
  - ②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한 통합공시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다.
- 제39조(지적재산권의 귀속) 진흥원의 직원이 그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적 재산권에 대하여는 진흥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양도 등과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 에 따른다.
- 제40조(준용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「민법」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「보건복지부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#### 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설립행위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진흥원 설립 당시 종전 한약진 흥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.) 이사회에서 의결한 재산과 권리·의 무의 승계, 진흥원 정관 등에 대한 사항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가 한 것으로 본다.
  - ② 진흥원 설립추진계획(안)에 따라 종전 재단의 설립과 관련된 제반행위는 진흥원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재단법인 한약진홍재단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진흥원 설립 당시 종전 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는 한의약육성법(법률 제15910호) 부칙 제3조에 따라 진흥원이 이를 승계 한다.
  - ② 진흥원 초대 원장은 재단 원장이 승계하되, 임기는 재단 잔여임기까지로 한다.
  - ③ 진흥원 설립 당시 종전 재단의 비상근 임원은 진흥원의 비상근 임원으로 보되, 그 임기는 종전 재단 잔여임기까지로 한다.
  -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잔여 임기 만료로 인한 임원의 지위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 정관 및 제 규정과 법령에 의한다.
  - ⑤ 진흥원 설립 당시 재단의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.
  - ⑥ 진흥원은 제6항에 따른 직원과 고용승계 전 재단 사이에 이루어 졌던 근로계약상의 권리·의무를 포괄 승계하고, 재단이 행한 임용·복무·포상·징계 및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를 진흥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.

- 제4조(지방자치단체 임원 순서) 정관 제6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당 연직 이사는 2개 지방자치단체가 2년 단위로 순환하여 이사로 참여한다.
- 제5조(정관작성 및 서명) 재단 이사는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, 이사 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.

### [별지]

### 기본재산목록

【법인명 : 한국한의약진흥원】

## 1. 기본재산 총괄표

재산명	수량(건)	평가액(원)	비고	
예금	1	51,000,000	재단 설립 자본금 및 출연금	
토지	2	3,554,054,330	본원 및 품질인증센터 대지	
건물	2	7,143,401,716	上海 喜 医邻氏反侧的 石田	
		1,896,794,927		
보증금	1	100,000,000	서울분원 임대보증금	
합계	6	12,745,250,973		

## 2. 기본재산목록

	종별(소재지, 지목)	수량 (지적)	평가액(원)	
예금	-	_	51,000,000	
토지 -	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94, 대	9,911 m²	3,554,054,330	
	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17, 대	443 m²		
건물 -	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94, 건물	5,556 m²	7,143,401,716	
	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17, 건물	1,367 m²	1,896,794,927	
보증금	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(남산스퀘어 12층)	675 m²	100,000,000	
합계			12,745,250,973	

# [붙임]

# 법인이 사용할 인장

1) 직 인	2) 대표이사의 인	3) 계인